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2년 9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전환사채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 마련
-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

세무 및 법률정보

- 2022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 2022년 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 전환사채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 마련

[출처: 금융감독원, 2022.09.07]

검토배경

1. 검토 배경

□ '21.10월, 금융위는 전환사채가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확대에 이용되는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1.12월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상장회사 CB·BW 대상) >

- (전환가액 조정, Refixing) 전환가액 하향조정이 가능한 사모발행 CB에 대해 주가 상승시에도 상향조정을 의무화
 - ☞ 전환가액 하향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에 따라 CB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일반주주들의 지분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되는 것을 방지
- (콜옵션 제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 부여 CB 발행시, 콜옵션 행사한도를 CB발행 당시 지분을 한도로 제한하고, 콜옵션 관련 공시무 강화
 - ☞ 콜옵션을 활용하여 CB가 최대주주의 지분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 아울러, 회계 측면에서도 CB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제3자 지정 콜옵션부 CB를 발행한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 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발행조건도 주식공시('22.5.4. 보도자료 참조)

□ 한편, 리픽싱 등에 대한 규제강화가 기업의 자금조달을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도개선 과정에서 제기되었습니다.

* 리픽싱은 CB의 투자매력도를 높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해주는 순기능 있음

◇ 개정규정 시행('21.12.1일) 이후 전환사채 시장의 발행동향을 점검하였고 추가적인 제도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장동향

2. 전환사채 시장 동향 (※상장사, 이사회 결의일 기준)

□ (발행규모) 금년 상반기중 월평균 CB 발행금액은 5,790억원으로, 전년동기(9,046억원) 대비 36% 감소하였습니다.

* 월평균 발행금액(억원): ('20.上)6,773 ('20.下)6,263 ('21.上)9,046 ('21.下)9,873 ('22.上)5,790

○ 이는 일반회사채 발행량 감소추이(전년동기比 △29.2%)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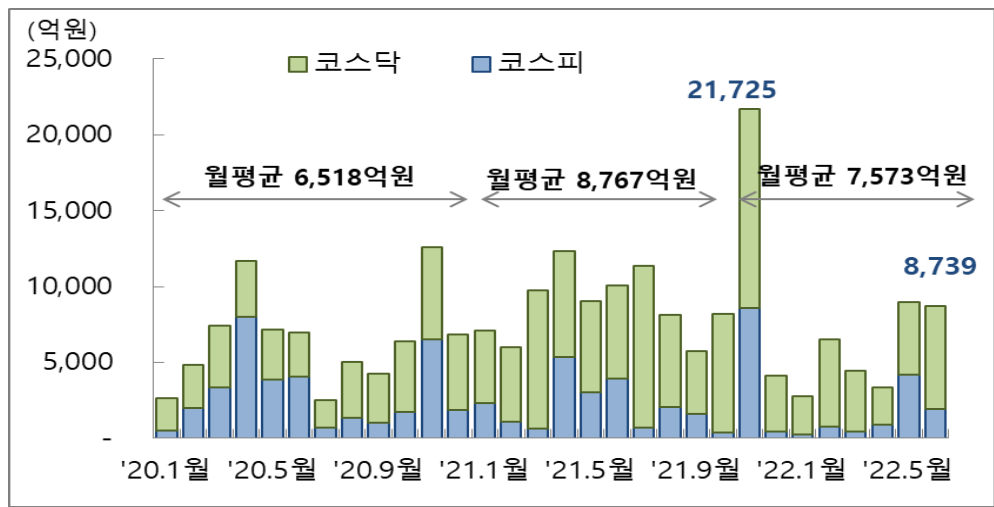
○ 다만, 규정개정 직전 先발행규모('21.11월, 2.2조원)을 포함할 경우, 월평균 CB 발행금액은 일시적 변동 후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 월평균 발행금액(억원): ('20년)6,518 ('21.1~10월)8,767 ('21.11월~'22.6월)7,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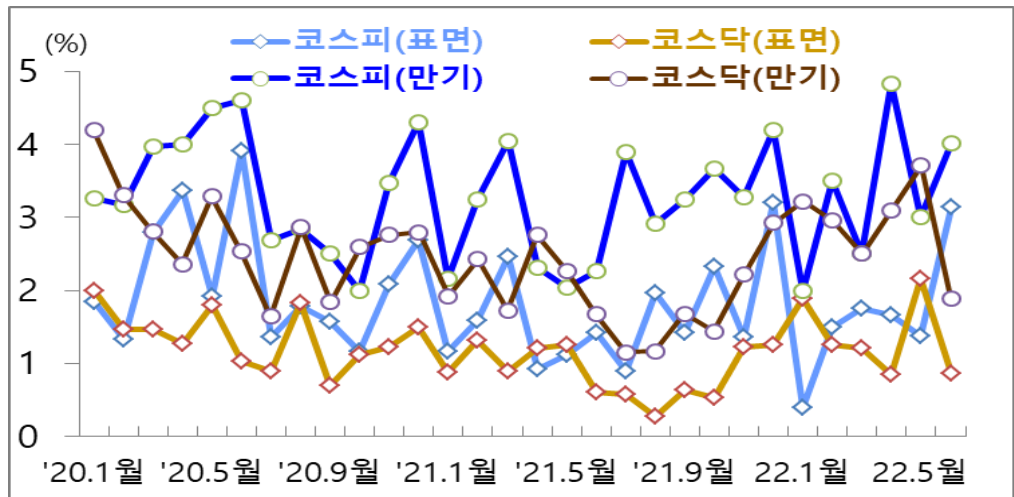
□ (발행금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동성 확대 등에 따라 '20년중 소폭 하락하였으나,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 다만, CB의 경우 발행금리뿐만 아니라 전환차익까지 감안하여 수익률이 결정되는 만큼, 통상적인 회사채 금리와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

CB 발행규모(유가·코스닥)



CB 발행금리(유가·코스닥)



① (리픽싱 비중) 개정규정 시행 이후 리픽싱 조건을 부여한 CB발행 비중은 하락(건수 기준 '21년 88.5% → '22.上 65.2%)하였습니다.

□ (콜옵션 비중) 개정규정 시행 이후 콜옵션 조건을 부여한 CB 발행 비중도 하락(건수 기준 '21년 72.4% → '22.上 61.0%)하였습니다.

리픽싱 및 콜옵션 부여 CB 발행 비중

(단위 : %)		'21.1Q	'21.2Q	'21.3Q	'21.4Q	'21년	'22.1Q	'22.2Q	'22.上
리픽싱	건수	89.7	92.1	88.6	83.5	88.5	68.0	62.9	65.2
	금액	68.1	82.8	96.0	69.4	78.7	42.7	39.9	41.0
콜옵션	건수	61.1	72.9	77.9	75.6	72.4	57.3	64.0	61.0
	금액	71.9	78.3	91.8	75.2	79.1	57.6	85.3	74.4

평가 및
보완 필요성

3. 평가 및 보완필요성

◇ (시장 영향) 현재로서는 개정규정 시행('21.12월)이 CB 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을 크게 제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

* 다만, 최근 금리상승 등으로 기업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만큼, CB 시장도 악화 소지

◇ (주요 성과) 자금조달을 크게 제약하지 않는 상황에서 리픽싱 및콜옵션 조건이 부여된 CB 발행비중이 하락 추세

◇ (보완 사항) 리픽싱·콜옵션이 가능한 여타 메자닌 증권과의 규제형평성 문제 및 풍선효과 가능성 → 제도적 보완 필요

□ (시장 영향) 개정규정 시행('21.12월)이 기업의 자금조달을 크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에 어느정도 안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CB 발행규모는 전년 대비 다소 축소되었으나, 규정개정으로 인한 큰 충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21년 대비 발행규모가 다소 감소(월평균 약 △1,200억원)하였으나, 이는 '21년중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CB 발행량이 많았던 점을 감안할 필요[※월평균 발행금액(억원) : ('20년)6,518 ('21.1~10월)8,767 ('21.11월~'22.6월)7,573]

○ 다만, 최근 물가·금리·환율 상승, 원자재 애로 등으로 전반적인 기업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만큼, CB 시장상황도 악화될 소지도 있습니다.

* 일각에서는 기존 CB 투자자들이 최근 주가하락 등으로 주식전환을 포기하고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발행기업 자금애로가 악화될 가능성 제기

- (주요 성과) 제도개선 이후 리픽싱·콜옵션 부여 비중이 감소하였습니다.
 - 지난 제도개선은 CB가 최대주주 지분확대에 악용되고 일반 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되는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 기업자금조달을 크게 제약하지 않은 상황에서 리픽싱 및 콜옵션 활용비중이 낮아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보완 사항) 다만, (상환)전환우선주 등 리픽싱·콜옵션이 가능한 여타 매자인 증권과의 규제형평성 문제 및 풍선효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 리픽싱·콜옵션 조건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CB·BW와 마찬가지로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확대 및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 해당 종류주식은 주로 비상장회사가 발행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난 제도개선 대상(상장회사 CB·BW)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그러나, 상장회사도 리픽싱·콜옵션 조건을 부여한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콜옵션 부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1.11~'22.6월 기준 콜옵션부 (상환)전환우선주 중 콜옵션을 발행회사에 부여한 경우가 18.4%,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77.4%, 최대주주는 4.1%였습니다.
 - 발행회사 지정 제3자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대주주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최대 81.5%(=77.4+4.1)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상장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리픽싱·콜옵션 조건 부여 현황

(건수:건, 금액:억원)		'21.9	'21.10	'21.11	'21.12	'22.1	'22.2	'22.3	'22.4	'22.5	'22.6
총 발행 건수		5	2	13	8	1	2	6	4	12	8
리픽싱 (하향)	건수	4	0	11	5	0	1	3	0	10	7
	금액	1,430	0	2,525	269	0	148	561	0	2,567	820
리픽싱 (상·하향)	건수	0	0	0	0	0	0	1	0	0	0
	금액	0	0	0	0	0	0	700	0	0	0
콜옵션	건수	0	0	3	1	0	0	1	2	7	5
	금액	0	0	625	46	0	0	15	1,115	2,146	877
회사	건수	0	0	0	0	0	0	0	0	2	0
	금액	0	0	0	0	0	0	0	0	890	0
회사 or 제3자	건수	0	0	3	1	0	0	1	2	4	5
	금액	0	0	625	46	0	0	15	1,115	1,056	877
최대 주주	건수	0	0	0	0	0	0	0	0	1	0
	금액	0	0	0	0	0	0	0	0	200	0

대응방안

4. 대응방안

□ (모니터링) 기준금리 인상, 원자재 수급불안 지속 등으로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CB 시장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습니다.

□ (제도개선)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서도 (CB·BW와 동일하게) 리픽싱·콜옵션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 (리픽싱 규제) 상장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사모*발행하는 경우 주가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합니다.

* 현행 CB·BW 규제와의 형평성·규제정합성 제고, 공모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 강화된 발행절차 규제가 적용되는 점 등 감안

- (조정의무) 주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할 경우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합니다.

- (조정범위) 상향조정시 조정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이내로 제한합니다.

○ (콜옵션 규제)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하고 공시의무를 부과합니다.

- (행사한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콜옵션 행사한도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당시의 지분을 이내로 제한합니다.

- (공시의무) 제3자의 콜옵션 행사, 상장법인이 자기 (상환)전환우선주를 제3자에게 매도시 발행회사에 공시의무를 부과합니다.

추진계획

5. 추진계획

□ 금년중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9월중 규정개정 예고)

□ 아울러, 전환사채 등 시장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용어 설명 >

- 전환사채(Convertible Bonds) :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로서 사채 보유자의 의사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부착된 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 발행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 전환우선주(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 상환우선주(Redeemable Preference Shares) : 회사가 상환하거나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 상환전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 상환우선주와 전환우선주가 결합된 형태의 우선주
- 리픽싱(리셋) : 주가 변동시 전환가액(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그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행위
- 콜옵션(매수선택권) : 미리정한 가액으로 신주 등을 인수하거나 주식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주요내용

■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

[출처: 금융위원회, 2022.05.04]

<주요 내용>

- 그동안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올해부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하고, 발행조건도 주석 공시해야 합니다.
 -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로 표시하는 만큼 소액주주들은 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동안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하지 않은 기업은 회계오류를 수정(소급 또는 전진)하여야 하며 향후 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황

1. 현황

□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회계기준 적용 감독지침은 7번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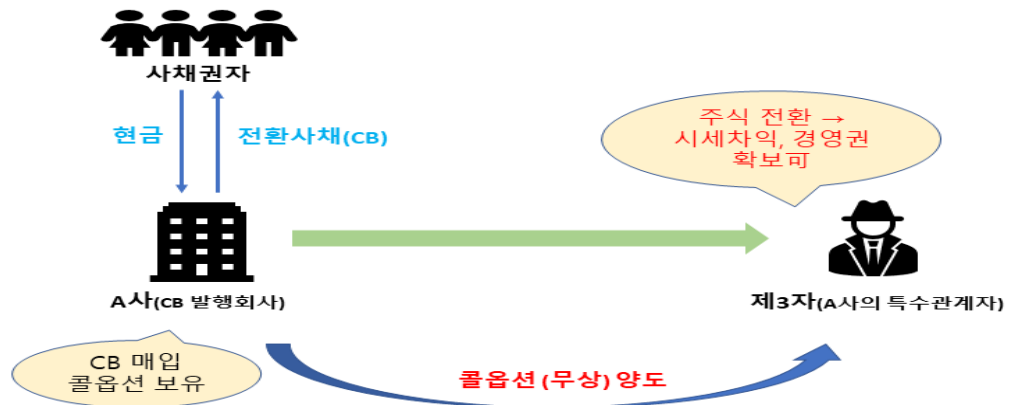
※ 참고 : 그 간의 회계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 및 가이드라인

- ①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8.9.19.)
- ② 新리스기준서 시행 前後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19.4.23.)
- ③ 물적분할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19.12.16.)
- ④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19.12.24.)
- ⑤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20.1.22.)
- ⑥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 및 후속조치('21.1.8., ' 21.2.8.)

□ 한국회계기준원은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접수하였습니다.

* 발행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전환사채 전체 또는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

< 제3자 지정 콜옵션 거래 개요 >



※ 전환사채에 부가된 파생상품이,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가능하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다면 별도의 금융상품임

□ 질의회신 연석회의* 논의 결과 해당 콜옵션은 향후 제3자 지정을 통해 발행자 외의 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와는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붙임 참조).

* 회계처리기준 해석 권한을 보유한 한국회계기준원의 자문기구로 질의회신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질의회신 연석회의 논의를 거쳐 회신하고 있음

○ 또한,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한다면 결산시점 마다 콜옵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P&L)으로 인식

□ 현재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회계처리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내 상장사 전환사채 발행 현황 및 주요 회계법인을 통해 파악한 결과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이 아닌 발행한 전환사채(부채)에 차감하여 회계처리

⇒ 이에, 올바른 회계처리를 안내하고 과거 재무제표 재작성과 관련한 기업의 실무부담을 완화하고자 감독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합니다.

**회계처리기준
주요내용**

2. (감독지침 도출에 사용된) 회계처리기준 주요내용

□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는 파생상품*이더라도, 해당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 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별도의 금융상품입니다(K-IFRS 제1109호 문단 4.3.1).

* 회계처리기준 상 파생상품으로 추가, 이자율 등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을 의미 → 「자본시장법」제4조의 파생상품보다 넓은 개념

□ 중요한 회계오류라면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진적용이 가능합니다(K-IFRS 제1008호 문단45).

**감독지침
주요내용**

3. 감독지침의 주요내용

□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회계오류인 만큼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그간 실무 관행*, 과거 발행시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불필요한 혼란 유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진적용을 허용합니다.

* 실무는 콜옵션을 별도 자산이 아닌 전환사채 장부금액(부채·자본)과 상계 표시

** 과거로 소급하여 콜옵션 가치를 재평가할 경우, 오랜 기간 경과에 따른 사후정보가 반영되어 정보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음

*** 전환사채에 내재된 콜옵션, 풋옵션, 주식전환권 등의 상호의존성 고려 시 콜옵션 별도 분리 회계처리가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

- (적용 대상) 감독지침 공표 전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도 포함
 - 다만, 감독지침 공표 전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
- (대상 재무제표) 감독지침 공표 후 발행·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분·반기 등 중간재무제표 포함. 단,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도 허용)
- (회계처리) 과거 오류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당기 초 기준으로 오류금액을 파악하여 누적효과를 당기 초 자본에 반영
 - 다만, 당기 초 기준으로 누적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효과를 당기 재무제표 손익에 반영*
 - * 누적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워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기손익에 반영했다는 사실을 주석에 공시하여야 함
- (주석 공시)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콜옵션 조건 및 전·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함
 - * (예) 제3자 양도 조건(무상 또는 유상), 콜옵션 평가손익 및 양도로 인한 거래 손익 등
- 다만,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달리 처리한 경우 그 사유를 상세하게 적시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4. 기대효과

- 이번 지침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환사채 매입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회계처리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 제3자 지정 콜옵션 부여 여부가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됨에 따라 소액주주등 정보이용자는 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보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21.12월부터 시행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과 함께 적용되는 만큼,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한층 개선 될 것입니다.
 - * '21.12월 이후 발행되는 CB는 ①제3자 지정 콜옵션 한도를 CB발행 당시 지분율로 한정, ②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 ('21.10.27일 증발공 개정안 보도자료 참고)

향후계획

5. 향후계획

- 동 지침에 따라 향후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지침을 마련·공표할 계획이며,
 - 그 일환으로 회계기준원 內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운영하여 산업별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

※ (붙임)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논의결과

붙임

(붙임)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논의결과

□ (배경)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같은 거래 당사자와 동 전환사채의 일부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

< 전환사채 및 콜옵션 발행 조건 >

■ 전환사채 조건(전환권, 풋옵션 포함)

- 발행금액 : 100억원(만기 5년)
- 표면이자 : 0% (단, 만기까지 전환권 미행사시 연 2% 이자를 보장)
- 전환권* : 특정 산식에 기초하여 회사의 주가에 따라 전환가액 변동
→ 전환주식수 변동 (주가하락시 전환주식수 증가)

* 전환사채 보유자는 전환권 행사로 사채의 권리(원금과 이자) 대신 주식의 권리를 획득

- 풋옵션* : 발행금액에 연 2% 복리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행사가능

* 전환사채 보유자가 행사할 수 있으며, 발행자(회사)에게 행사금액으로 만기전에 사채상환을 요구할 권리

■ 콜옵션* 조건

* 행사 시 특정 행사금액으로 기 전환사채 보유자로부터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를 획득

- '전환사채 발행자(회사)'나 '그 발행자가 지정한 제3자'가 보유·행사할 수 있음
- 콜옵션 보유자는 전환사채 약 3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발행금액에서 연 2% 복리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행사가능

※ 회사가 해당 콜옵션을 회사의 임직원에게 무상 부여할 경우, 그 임직원은 콜옵션을 행사하여 행사금액(예: 100원)보다 가치가 높은 전환사채(예: 시장가치 120원)를 취득하여 경제적 이익(예: 20원 = 120원-100원)을 얻을 수 있음

□ (의문사항) 회사의 콜옵션이 전환사채에 내재된 파생상품인지 별도의 금융상품인지?

□ (회계처리) 회사가 콜옵션 권리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하여 다른 금융상품(전환사채 및 풋옵션)과 독립적으로 해당 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 그 콜옵션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4.3.1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라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처리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3.1에 따르면,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는 파생상품이더라도, 해당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라 별도의 금융상품임

(2) 회사가 콜옵선의 행사자로서 회사가 아닌 제3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해당 콜옵선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그 지정된 제3자가 콜옵선을 행사하여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면 질의의 콜옵선은 별도로 양도할 수 있다고 판단 가능

(3) 즉, 회사가 콜옵선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이자, 원금의 지급, 전환권 행사에 따른 지분상품의 발행 등 전환사채에 대한 발행자의 의무를 여전히 회사가 부담한다면, 해당 콜옵선은 동 기준서 문단 4.3.1의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므로 내재 파생상품이 아닌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참고 1

(참고1) CB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21.12월 시행) 주요 내용

□ 주가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

☞ 전환가액은 발행당시 주가 등을 토대로 산정 → CB 발행 이후 전환가액 산정의 토대가 된 주식가치 변동시(주가변동, 증자·감자 등) 전환가액 조정가능

※ [예시] CB(발행가액 7천만원, 전환가액 만원) 발행 후 전환가액을 30% 하향조정

	전환가액	CB발행액	전환가능주식
발행시	10,000원	7천만원	7,000주 (7천만원/1만원)
하향조정	7,000원	상 동	10,000주 (7천만원/7천원)

(Note: In the original image, a red box highlights '30% 하향조정' between the first two rows, and a red circle highlights '+3,000주' between the last two rows.)

○ (현행) 주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시 주가 하락에 따른 '하향조정'만 규율 → (주가가 다시 상승시)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되면 기존 지분가치는 과도하게 희석

< 전환가액 조정제도 현황 >

시가변동

발행주식 수 변동

주가 상승: 전환가액 조정 규정 없음

감자: 지분을 증가비율만큼 상향조정 의무

주가 하락: 발행시 전환가액의 70%까지 하향조정 가능

증자: 지분을 감소비율만큼 하향조정 의무

○ (개정) 사모발행시 주가하락에 따른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할 때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하되, 조정 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한도 이내로 제한(즉, 최초 전환가액의 70~100%)

- 콜옵선부 전환사채 발행시 콜옵선 행사한도 제한
 - (현행) 다수의 CB에 콜옵선이 부여되면서('20년 기준 87%), 최대주주 등의 지분확대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 발생
 - (개정)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부여하는 콜옵선 한도를 CB 발행당시 최대주주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하고,
- CB 발행시 콜옵선 행사자, 전환가능 주식수 등을 공시
- < 콜옵선 행사한도 예시(기존 주식수 100, CB 50 발행) >

구분	현재지분		콜옵선 행사한도	
	甲(최대주주)	乙(특수관계인)	甲	乙
현행	30(지분율30%)	20(지분율20%)	한도 없음	
개정後	30(지분율30%)	20(지분율20%)	15까지 허용 (30%, 45/150)	10까지 허용 (20%, 30/150)

참고 2

(참고2) 전환사채 전환가액 결정방식

◇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발행시·하향조정시·상향조정시 모두 원칙적으로 시가 이상으로 결정해야 함

□ 발행시 전환가액

- (기준시점) CB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 (기준금액) 시가* 이상**

* Max[1개월·1주일·최근일 주가의 산술평균, 최근일 주가]
 ** [예외] 구조조정기업 등의 경우 전환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설정 가능

□ 주가하락에 따른 하향조정시 전환가액

- (기준시점) CB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결정한 조정일(주기)
 - * [예]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지난 날
- (기준금액) 시가 이상 (단,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

□ 주가상승에 따른 상향조정시 전환가액

- (기준시점) 하향조정을 위한 조정일과 동일
- (기준금액) 시가 이상 & 발행당시 전환가액 이하

※ CB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 실제 사례 (대부분의 CB발행시 동일하게 서술)

9. 전환가액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라.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지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당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참고 3

(참고3) 주식관련사채 및 관련 종류(種類)주식* 비교

*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주총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전환사채 (CB)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개념	회사채를 해당 회사의 주식(신주)로 교환할 권리가 부여된 채권	채권에 해당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붙은 채권 (분리형/비분리형)*	일정기간 후 <u>보통주</u> 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	일정기간 후 <u>보통주</u> 로 전환 & 일정기간 후 <u>발행회사에게 이를 되팔 수 있는</u> 우선주
구분	주식관련사채	주식관련사채	종류주식 (우선주)	종류주식 (우선주)
특징	전환권 행사 후에는 채권 소멸	전환권 행사 후에도 채권 존속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배당 가능	상환시 원금+이자 상당을 지급
근거 규정	상법 제513조	상법 제516조의2	상법 제344조	상법 제344조
현행 전환가액 규정 적용 여부	○	○	X	X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세정동향, 2022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외

2022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지난 7.21.(목)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8.30.(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개정안 적용 유예기간을 당초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7개 법률안들은 9.2.(금) 정기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2년 7월호 뉴스레터 또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2.07.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9.21.(수) 개최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¹에서는 1)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2) 세무조사 운영방향, 3) 과세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방안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계 전문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대표 자문기구('13년 발족)

□ 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운영방향(①납세편의 제고, ②민생경제 지원, ③공정과세 실현, ④소통문화 확산) 마련
- '국세행정 역량강화TF' 운영을 통해 대내외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 등 혁신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보고
- 주요 추진과제
 - 1) 국민 눈높이에 맞는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
 - (디지털 납세환경)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지능형 홈택스 구축 등
 - (신고편의 제고)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로 확대 등
 - (대외소통확대) 경제단체와 소통확대 및 국민참여단 활동 활성화 등
 - 2)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 (민생지원) 영세납세자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완화 등
 - (환급금 등 조기지급) 부가가치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등
 - (환급금 찾아주기)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한 인적용역 소득자 대상

- 3) 역동적 혁신성장을 국세행정 차원에서 뒷받침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대상) 모든 중소기업(수입금액 1백억~1천억), (범위) 기간제한 없이 공제·감면 위주, (방식) 매월신청, 다음달 말일까지 답변하는 것으로 확대
 - (연구개발 지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 및 심사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소통
 - (창업지원) 신종업종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센터, 영세납세자지원단 등
 - 4) 국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 (권리보호) 의견진술권 및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확대, 세무조사 가이드북 개정 등
 - (데이터 활용 확대) 공익목적 과세정보 요구에 대해 신속 제공 등
 - 5) 신중한 세무조사·세원관리를 통한 공정과세 구현
 - 6) 실용적 조직문화 조성
 - 업무 효율화 및 현장지원
 - 7) 역점과제 추진을 위한 TF 조성
 - 4대 운영방향의 뒷받침을 위해 민생경제 지원, 납세불편 해소,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 조직문화 개선 분과 설치
- 세무조사 운영방향
- 조사규모 축소 기초를 유지하면서 간편조사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의 조사부담 완화
 -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
 - 추진 과제
 - 1) 시장경제 활력을 지원하는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 조사규모 축소: ('21) 14,454 건, ('22 계획) 14,000 건
 - 조사부담 완화: 정기조사 비중 상향(63%), 간편조사 비율 확대(20%)
 - 조사시기 선택제도(납세자에게 희망시기(1~3순위)를 신청 받아 조사시기 결정)를 간편조사에 전격 도입, 중소납세자 스스로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적법절차·적법과세 TF 구성
 - 2)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에 엄정대응

- 과세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과세 전 법령해석, 사실판단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사전검증으로 과세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 과세 후에도 과세유지 여부를 직원별 평가에 반영하고 불복패소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등 관리 강화
 -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주요 제도 개선방안

단계	관련 제도	현행	개선
과세 전	과세기준 자문	· 국세청 내부검토 위주	· 외부 전문가 의견청취 활성화
		· 심판·판례와 배치되거나, 과세기준이 없는 경우 발생	· 최신 심판·판례를 반영해 회신내용 신속 정비
	중요사건 법리지원(예정)	· 선례가 있는 사건은 과세기준자문 회신 제외	· 중요사건은 승무조직에서 법리검토 및 의견제공
과세 후	과세품질평가	· 직원별 고지역 중 행정심 인용률을 평가	· 최종 과세유지 여부인 소송 결과까지 반영 · 정당한 과세위촉 방지위해 신종탈세 유형 등 평가제외
	패소원인분석	· 사례집 발간	· 교육 및 사전검증 지원 강화
	소송대응체계	· 사건별 관리, 대응전략은 담당자 개인역량에 의존	· 쟁점별 우수서면 제공 · 승소사건 노하우 반영한 소송대응전략 제공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부는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16. ~ 9.19. 입법예고 하였고, 9.20. 국무회의 등을 거쳐 9.23.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요건
 -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상속주택 요건
 - (일반상속)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저가주택·소액지분)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40% 이하)의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 지방 저가주택 요건

- 가액요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 및 지역요건(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아닌 지역) 충족하는 1채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납부유예

- 신청절차: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유예 신청서 제출 → (관할 세무서장) 납부유예 신청인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서면 통지
- 납부유예 종료 시 납부세액 계산방법 ①+②
 - ① (납부대상 금액) 납부유예 허가 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② (이자상당가산액) 납부유예 허가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징수세액 고지일까지 기간 x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1.2%)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의료법인이 지급받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2022.08.29.)

(회신)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4, 2022.08.29.)

(질의내용)

- 결손누적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자회사('피합병법인')가 다른 자회사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모회사가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방법

(제1안)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제2안)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2022.08.24.)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가능

(제2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불가능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08.24.)

(질의내용)

-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법인령§70①(2), 이하'특례배제 규정')되는데,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의 손금 여부

(제1안) '특례배제 규정'적용(→손금불산입)

(제2안) '특례배제 규정'적용 제외(→손금산입)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